

#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2월 7일 김포시장  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10일  
다. 상정일자 : 2004년 12월 13일  
라. 의결일자 : 2004년 12월 14일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통합되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가.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회의는 매년 상,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음(안 제6조)
- 다.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,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(안 제7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안건은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(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운영)에 따라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
- 김포시의 안전관리계획,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및 건축물, 교량, 터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어 인공구조물의 하자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·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